

한국국제통상학회 『國際通商研究』 편집위원회 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통상학회 학술논문집 『國際通商研究』(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 구성

- (1)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칙 제6조(2)항의 「국제통상연구」 발간위원회는 「국제통상연구」 편집위원회'를 의미한다.
- (2) 학회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 4인 이내의 편집부위원장,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 업적이 우수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연도 1월 1일로 한다.

3.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

- (1)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연도 1월 1일로 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

- (1)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조(학회지 발간)

- (1) 학회지는 연 4회(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 (2)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특별호 게재 논문 수는 연 4편을 초과할 수 없다.
- (3) 특별호 발간시, 편집위원회는 이를 관리·감독할 특별호 편집위원장을 임명한다.

제4조(학회지 편집방침 및 심사절차)

1. 일반 방침

- (1) 국제경제, 국제통상, 국제경영, 국제협력, 국제법 등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연구자는 누구나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2)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거친 논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방향이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논문, research note 형태의 논문도 투고가 가능하다.
- (3)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예외로 한다.
-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5)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갖는다.
- (6)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료 및 게재료

- (1) 심사료(10만원)는 게재가 확정된 후 납부한다.
단, 신속심의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논문 심사료(30만 원)를 심사에 앞서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심사료(10만 원)와 인쇄 후 게재료 및 별쇄본 제작비(20만 원, 연구비 지원 논문은 30만 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출판 기준 논문의 길이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장당 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심사절차

- (1)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투고 시 논문파일은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본 학회발표논문의 심사는 1인의 심사자와 학술회의 논평자가 담당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 (3)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단, 학회발표논문 심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신속심의로 투고한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속심의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등급 4단계 중 3단계인 「수정 및 보완 후 재심」을 제외하고, 1. 「무조건 게재」, 2. 「수정 및 보완 후 게재가능」, 4. 「게재불가」만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5)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

- 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7)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8)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당초 심사자가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9)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 초청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4. 논문심사 기준

- (1)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논문 주제의 중요도
 - ② 문헌연구의 충실성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논문 내용의 서술 및 표기의 적합성
 - ⑤ 논문의 질적 수준
 - ⑥ 심사자의 최종판정

(2) 심사결과 처리

※ 판정기준

6개 항목에 대해 각각 1~5점까지 부여(총점 30점 만점)

총 점수	최종판정내용
총점 24점(80%) 이상	무조건 게재 또는 수정 및 보완 후 게재가능
총점 18점(60%) 이상 23점 이하	수정 및 보완 후 재심
총점 17점 이하	게재불가

항목 예시) 연구방법의 타당성은?

5점: 매우 높음()

4점: 높음()

3점: 보통()

2점: 낮음()

1점: 매우 낮음()

심사등급은 4단계(1. 무조건 게재, 2. 수정 및 보완 후 게재가능, 3. 수정 및 보완 후 재심, 4.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그리고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시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 ① 1/1: 수정 없이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 ② 1/2, 2/2: 수정 후 게재.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부 가능하며 수정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담당
- ③ 1/3, 2/3, 3/3: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는 '3'의 판정을 한 심사자가 함을 원칙으로 함.
- ④ 1/4, 2/4: 제3의 심사자에게 위촉하여 최종 판단. 제3의 심사자도 '4'의 판정을 하면 심사종결 및 게재 불가 통보
- ⑤ 3/4, 4/4: 게재 불가 통보

(3)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사는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5. 저작권의 보유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제출

-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단, 논문을 출판하기 전에 모든 저자(들)을 대표하여 교신저자를 통해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 (2)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논문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회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6.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 및 서약서 제출

- (1) 투고된 논문은 모든 저자(들)을 대표하여 교신저자를 통해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 및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 (2) 만약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에 대해 미응답하거나 허위 응답이 확인될 경우 게재 불가 및 게재 취소를 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 (1)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확정 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1) 본 내규는 2003년 5월부터 시행한다.
- (2) 본 내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
- (3) 본 내규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 (4) 본 내규는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

- (5) 본 내규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한다.
- (6) 본 내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한다.
- (7) 본 내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 (8) 본 내규는 2015년 6월부터 시행한다.
- (9) 본 내규는 2018년 9월부터 시행한다.
- (10) 본 내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